

---

#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

2024년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84. 3. 01.
제30차 개정	2023. 12. 26.
제31차 개정	2024. 7. 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길 17-14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6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공휴일
2. 개교기념일 (12월 4일)
3. 하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동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말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의 3, 4, 5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학급편제·학급수·학생정원

**제8조(학급 편제)**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되, 선택군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학급수)** 학습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0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

### 제11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⑤ 정규 일과시간 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
- ⑥ 학교 밖 교육과정 개설 시,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로 한다.

### 제12조(과목의 수업량 기준)

- ①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 ② 1학점은 1회 50분, 한 학기 17회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체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제13조(선택과목의 개설 및 폐강) 선택 과목은 교사 수급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개설한다.

- ① 학생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목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 최소 인원은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위 1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2.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 및 시간 강사 등의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한 학급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분반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 또는 수업 담당교사의 동의를 받고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으로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최소 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수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제14조(소수 선택 과목의 개설)

- ① 학교장은 위 제5조 1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소수 학생 선택 교육과정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5명 이상의 학생의 신청한 경우
  2.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학생(학부모) 또는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②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1. 다수 학생이 선택한 수강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2.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3. 교원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소수 선택 교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책임 이수'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선택 과목의 변경)

- ① 학생이 수강 중인 당해 학년도의 선택 과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을 불허한다.
- ② 학생이 수강신청을 통해 선택한 과목은 당해연도 최종 교육과정과목선택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업학급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③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 변경, 수강 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항의 수강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 12월 방학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최종 확인' 이후 과목변경으로 인한 교과서는 학생 개인이 구입하도록 한다.
- ④ 학적 변동(편입생, 전입생, 복학), 천재지변, 사무착오, 장기 결석, 학교폭력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과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변경 신청 기간은 해당 학기 수업일 수 기준으로 1/3선 이내(수강인정이 되는 최소기간 준수)까지이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 및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과목 변경 절차)

- ① 선택 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1차 상담한다.
- ② 학생 및 학부모는 관련교사(교과 담당교사, 교육과정부장, 상담교사)와 2차 상담한다.
- ③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과목 선택 변경원과 서약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교육과정부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한다.
- ④ 필요할 경우 학부모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로 과목을 변경한다.

### 제17조(공강 운영)

- ①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 학생별 공강 시간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공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② 공강 시간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와 담당 지도 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18조(수업 운영 방법 등)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제20조(수업일수)

-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 ④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 제21조(교외체험학습)

-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일 이내로 한다.
-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 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하다.
- ⑤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⑥ 교환학습(개인, 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 ⑦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이후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⑧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⑨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⑩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⑪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2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23조(입학 시기)** 입학,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4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25조(입학전형방법)**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하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재입학)**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27조(전·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

-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과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7조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할 수 있다.
  -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28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전·편입학 서류)**

- ①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원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 재적교에서 이송 받아야 한다.

**제30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원을 출원하여 복학하며, 복학 시기는 제25조 제2항의 출석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1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32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5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학교의 장에 의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쳐 조기 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
- ③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3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전까지 한다.

**제37조(선정 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석차등급에 이수 단위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입학 배정 인원의 5% 이내이고(단, 전북과학고는 20%이내인 자), 교과목(이수한 단위 수 기준)의 80% 이상 학업성취도가 A인 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단, 과목 성취도가 등급이 아닌 경우(예: 예체능)는 제외함.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8조(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9조(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본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 제40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단,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전까지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 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세부사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8장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 징수

**제43조(수업료 등)**

-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 ③ 기타의 비용(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교육비 등)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한다.

**제44조(수업료 등의 감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제9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45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목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과 효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예·체능 또는 특기가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 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 ④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⑥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 ⑦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⑧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7조(학생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 제10장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제48조(학생회의 조직)**

- ①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학교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 ②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④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교 생활(교과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견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견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 · 복지 · 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49조(학생회의 운영)**

- ① 학생회 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회 활동은 학생인성인권부장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회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50조(학생회 활동규정)** 학생회의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1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제52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 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분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3조(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제12장 장애인 차별 금지

### 제54조(차별금지)

-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

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5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제56조(개인정보보호)

-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제57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8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장 학칙 개정

#### 제59조(학칙 개정절차)

-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②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한다.

#### 제60조(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칙

1.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1999년 9월1일 교명 변경으로 한남여자고등학교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로 정정한다.
16.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학칙은 대통령령 제18282호('04.02.17)에 의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대조표

개정전(2006. 3. 18. 시행)	개정후(2021. 3. 1. 시행)
제25차 개정 2006. 3. 18.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학교교육과-16459(2020.11.6.) 공문에 의거 상기와 같이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함.
개정전(2021. 3. 1 시행)	개정후(2021. 8. 1 시행)
제52조(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학칙 개정절차)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전(2021. 8. 1 시행)	개정후(2023. 1. 1 시행)
제8조(학급 편제)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급 편제)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되, 선택군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내용 없음	(신규 삽입 내용) <b>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b> <b>제2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b>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b>제27조(학업중단숙려제)</b>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이후 일련번호 수정

개정전(2021. 8. 1 시행)	개정후(2023. 1. 1 시행)
<p><b>제39조 (학생회의 조직)</b></p> <p>①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p>	<p><b>제41조 (학생회의 조직)</b></p> <p>①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학교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p>
<p><b>제40조 (학생회의 운영)</b></p> <p>② 학생회 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p>	<p><b>제42조 (학생회의 운영)</b></p> <p>② 학생회 활동은 학생인성인권부장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p>
<p><b>제44조 (결석의 종류)</b>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p>	<p><b>제46조 (결석의 종류)</b>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②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p>
<p><b>제45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b></p> <p>② 학생폭력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b>제47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b></p> <p>②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b>내용 없음</b></p>	<p><b>(내용 삽입)</b> 제47조-②-8. 학교장의 자체해결 심의</p>
<p><b>제46조(차별금지)</b></p> <p>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48조(차별금지)</b></p> <p>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개정전(2023. 1. 1 시행)	개정후(2023. 4. 11 시행)																																				
<p><b>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b>  <b>제14조(교외체험학습)</b></p> <p>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p> <p>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p> <p>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p> <p>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p> <p>⑦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p> <p>⑨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p>	<p><b>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체험학습</b>  <b>제14조(체험학습)</b></p> <p>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일 이내로 한다.</p> <p>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p> <p>③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p> <p>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하다.</p> <p>⑦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p> <p>⑨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p>																																				
개정 전(2023. 1. 1 시행)	개정 후(2023. 4. 11 시행)																																				
(제45조 경조사 출결)	(제45조 경조사 출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head> <tbody> <tr> <td>결 혼</td><td>○ 형제, 자매, 부, 모</td><td>1</td></tr> <tr> <td>입 양</td><td>○ 학생 본인</td><td>20</td></tr> <tr> <td rowspan="4">사 망</td><td>○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td>5</td></tr> <tr> <td>○ 증조부모, 외증조부모</td><td>3</td></tr> <tr> <td>○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td></td></tr> <tr> <td>○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td>1</td></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head> <tbody> <tr> <td>결 혼</td><td>○ 형제, 자매, 부, 모</td><td>1</td></tr> <tr> <td>입 양</td><td>○ 학생 본인</td><td>20</td></tr> <tr> <td rowspan="4">사 망</td><td>○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td>5</td></tr> <tr> <td>○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td><td>3</td></tr> <tr> <td>○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td></td></tr> <tr> <td>○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td>1</td></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개정 전(2023.4.11 시행)	개정 후(2023. 12.26 시행)
내용없음	<p><b>제41조 (학생생활)</b></p> <p>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b>학생생활규정</b>)을 두어 운영한다.</p>
학교 규칙 일련번호 수정	<p><b>제41조 내용첨가에 따른 일련번호 수정</b> (이전의 42조-43...등으로 이후 일련번호 수정)</p>
<p><b>제40조 3항</b></p> <p>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p>	<p><b>제40조 3항</b></p> <p>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b>학생 생활규정</b>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p>
<p><b>제40조 8항</b></p> <p>⑧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정한다.</p>	<p><b>제40조 8항</b></p> <p>⑧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b>학생생활 규정</b>에 따라 정한다.</p>
<p><b>제54조 2항</b></p> <p>②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p>	<p><b>제55조 2항</b></p> <p>② <b>학생생활규정</b>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p>
<p><b>제54조 3항</b></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자문한다.</p>	<p><b>제55조 3항</b></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b>학생생활규정</b>의 제·개정 사항을 <b>심의</b>한다.</p>

개정 전(2023.12.26 시행)	개정 후(2024. 5. 00 시행)
<p>제9조(학급수·학생정원)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급생</li> <li>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li> <li>③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li> <li>④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li> <li>⑤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li> </ul>	<p>제9조(학급수) 학습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p> <p>제10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p>
학교 규칙 일련번호 수정	내용 첨가·삭제에 따른 일련번호 수정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p><b>제11조(교육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li> <li>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li> <li>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li> <li>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li> <li>⑤ 정규 일과시간 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li> <li>⑥ 학교 밖 교육과정 개설 시,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로 한다.</li> </ul>

개정 전(2023.12.26 시행)	개정 후(2024. 5. 00 시행)
추가	<p>제12조(과목의 수업량 기준)      제13조(선택과목의 개설 및 폐강)      제14조(소수 선택 과목의 개설)      제15조 (선택 과목의 변경)      제16조 (과목 변경 절차)      제17조 (공강 운영)</p>
<b>제25조(수료 및 졸업)</b> <p>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로 정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 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p>	<p><b>제32조(수료 및 졸업)</b>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p>
<b>제29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선정 시기)</b>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p><b>제3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선정 시기)</b>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전까지 한다.</p>
<b>제3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b> <p>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p>	<p><b>제40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b>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단,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전까지 한다.</p>
<b>제38조(체납자 조치)</b>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 기일이 경과한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삭제
<b>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b> <b>수정</b>	<p><b>제51조 (출결사항)      제52조 (결석의 종류)      제53조 (지각·조퇴·결과)</b>  <b>수정</b></p>
<b>제54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b> <p>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삭제